



##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2. 7. 12.] [법률 제18744호, 2022. 1. 1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교환·환불) 044-201-3838, 3839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인증, 튜닝) 044-201-3840, 384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리콜) 044-201-3843, 4999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매매, 경매 등) 044-201-3856, 3857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등록업무) 044-201-3860, 386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검사, 정비) 044-201-3858, 3859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 자율주행자동차) 044-201-3848, 3849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 자동차 안전기준) 044-201-3850, 3853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5. 24., 2013. 3. 23.>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양수한 소유자가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를 갈음하여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